산업통상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 23.(목) 17:30 < 10.24.(금) 조간 > 배포 2025. 10. 23.(목)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등 2건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제465차 무역위원회도 같은 날 개최하여, 2건 조사개시 보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3일(목)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465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2건의 조사개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공청회는 '25.3월 조사 개시한 ①「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②「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개최하고 있다.

「일·중 열간압연제품」과「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는 지난 9월부터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사건으로서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①「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덤핑조사 및 ②「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50)
		담당자	사무관 박만희	(044-203-5851)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우혜영/강석하	(044-203-5861/5862)
			주무관 임예은	(044-203-5865)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3860)
		담당자	사무관 이주혜	(044-203-3864)
			주무관 안채린	(044-203-3867)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우준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최종화/양나래	(044-203-5888/58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공청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원심)

□ 조사 개요

○ 신청인 : 현대제철㈜

○ 조사대상공급자 : (日) JFE Steel, Nippon Steel 등 6개社,
(中) Baoshan Iron & Steel, Bengang Steel Plates 등 5개社

○ 조사대상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 **(정의)**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미포함
- **(용도)** 냉간압연 제품의 원재료, 건설 구조용(거푸집, 철판망, 방화벽 등), 강관용, 자동차용(내관, 외관, 부속품 등) 등 다양한 산업 생산물의 재료 등으로 사용
- **(관세분류)**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등 38개
 - 기본관세율 5.0~8.0%, RCEP 0%, 한-중 FTA 0%

○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1.1~'24.12월, (덤핑조사) '23.7~'24.6월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25.9.23~'26.1.22)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일본	JFE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3.57%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관계사	31.58%
	그 밖의 공급자 (조사대상 상사 4개社 포함)	32.75%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관계사	29.89%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관계사	28.16%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	33.10%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	33.10%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33.10%
	그 밖의 공급자	33.10%

□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 조사신청('24.12.19) → 조사개시('25.3.4) → 예비판정(7.24) → 공청회(10.23) → 최종판정('25.12월 예정)

참고2 [공청회]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원심]

□ 조사 개요

○ 신청인 : LS전선㈜

○ 조사대상공급자 : (中) 형통, 양쯔, 진씽통 3개社

○ 조사대상물품 : 단일모드 광섬유(Single Mode Optical Fiber)

- **(정의)**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7.D중 Low Loss 제품은 제외
- **(용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 네트워크의 정보전달 매체로 사용되는 광케이블 제조용 원료
- **(관세분류)** HSK 9001.10.0000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0%

○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1.1~'24.12월, (덤핑사실) '23.7~'24.6월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25.9.19~'26.1.18)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미대응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미대응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43.35%	미대응

□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

○ 조사신청('25.1.2) → 조사개시(3.7) → 예비판정(7.24) → 공청회(10.23) → 최종판정('25.12월 예정)

참고3 [무역위안건: 조사개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원심]

□ 조사 개요

○ 신청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 공급자 : (中) ARKEMA Company, Samsung Trading Shanghai, Pinghu Petro Chemical 3개사

○ 조사신청물품 : 부틸 아크릴레이트(Butyl Acrylate)

□ 조사개시 결정 내용

○ 조사대상물품 : 조사신청물품과 동일

- **(범위)** 아크릴산(Acrylic Acid)과 부탄올(Butanol)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 (분자식 : CH_2=CH-COO(CH_2)$_3$$CH_3$)
- **(용도)**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소재
- **(관세분류)** HSK 2916.12.3000
 - 기본세율 8.0%, WTO 6.5%, 한-중 FTA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1.1~'25.6월, (덤핑사실) '24.1~'24.12월

○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등

참고4 (무역위안건: 조사개시)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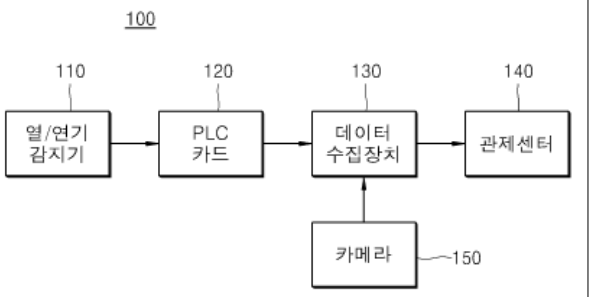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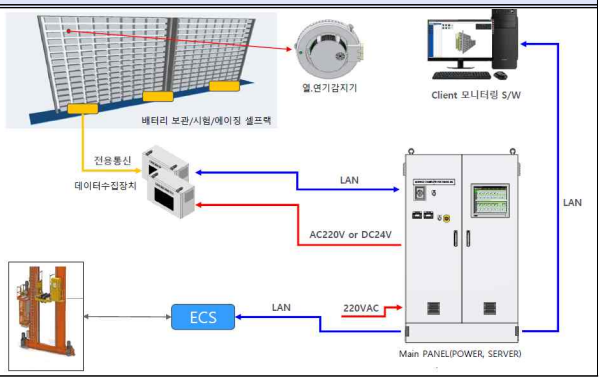
○ **(신청인)** 주식회사 마루지앤에스

○ **(피신청인)** 국내기업 A

○ **(특허권)** 제10-1214494호, 제10-1263302호

○ **(조사대상물품)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 열 또는 연기 감지기로부터 화재 발생을 감지하며, 이를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모두 포함한 시스템

특허 주요 도면	조사대상물품
	

○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